

#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19.04.17. 개정 2020.04.03. 개정 2021.03.31. 개정 2022.03.04. 개정 2024.03.01.

## 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정보시스템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9.04.17.>

## 제2조 (구성)

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2012.07.16.>
- ② 위원장은 학술정보원장으로 한다.<개정 2019.04.17.> <개정 2021.03.31>
- ③ 위원 구성은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입학처장, IT지원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9.04.17., 2020.04.03., 2021.03.31., 2022.03.04., 2024.03.01.>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IT지원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9.04.17.><개정 2020.04.03.>

## 제3조 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4조 (직무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① 정보화사업 관련 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<개정 2019.04.17.>
- ② <삭제 2019.04.17.>
- ③ <삭제 2019.04.17.>
- ④ 정보보안 정책 등 정보보안에 관한 제반 사항<신설2012.07.16.><개정 2019.04.17.>
- ⑤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<신설2012.07.16.>
- ⑥ 정보시스템 운영규정-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<개정 2019.04.17.>
- ⑦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제④항에서 이동 2012.07.16.><개정 2019.04.17.>

## 제5조 (회의 및 의결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6조 (회의록 작성)

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1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4.17.)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03.)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03.31.)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3.04)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01.)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